

노인을 **보호**하는 힘,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 의료인 대상 교육교재 |

www.noinboh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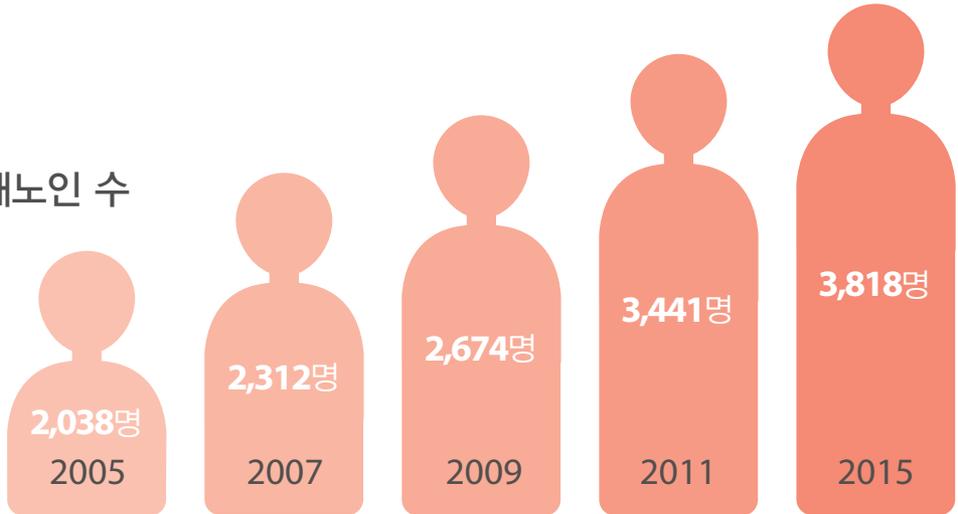




노인학대현황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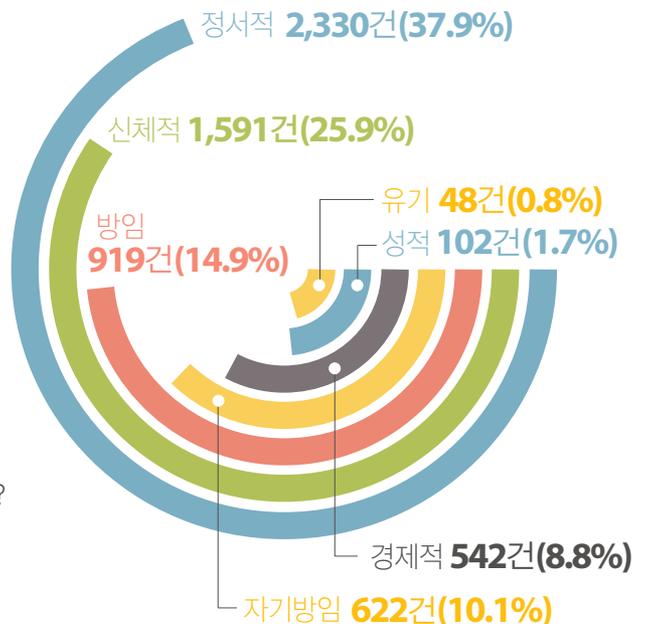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학대유형별
비율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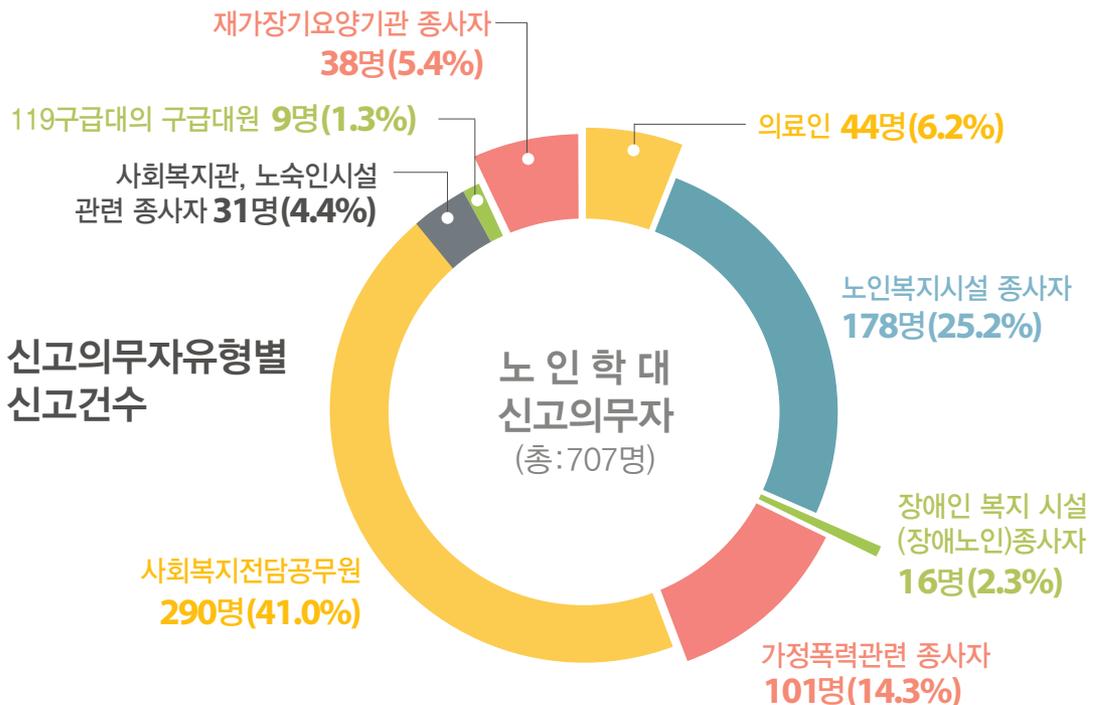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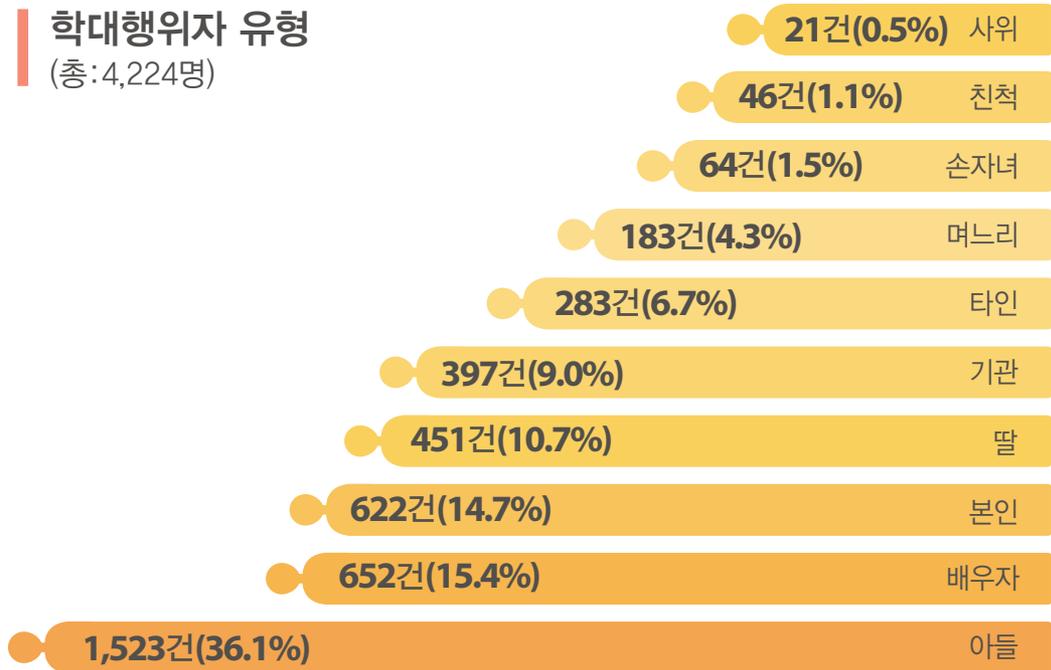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 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학대행위자 유형

(총: 4,224명)

신고의무자유형별
신고건수



나는 신고의무인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 료 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보호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위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분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인권 감수성”

-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BO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있어 왔음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을 가짐
- ③ 반복성 : 노인학대는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함
- ④ 은폐성 : 신고를 꺼리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측 징 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측 징 후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측 징 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에 걸림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측 징 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챈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측 징 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주변 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음
- 노인 스스로 의료적 처치, 의식주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험함(자기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HO

호互호護호好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의료인의 역할)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① 학대로 인한 손상과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② 노인학대 판정 등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등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며 증거물 및 기록을 남깁니다.
- ③ 노인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경찰관서(112) 등으로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노인학대 선별도구²⁾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현장에서 발견 시)

이 선별도구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8가지 중 1개의 항목에서라도 학대가 의심이 되면 노인학대에 대한 진료 절차를 진행하고 1577-1389로 전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항목 분류	내 용	체크
병력청취	① 환자가 발병 후 혹은 수상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늦게 왔는가?	
	② 보호자와 환자에게 병력을 물었을 때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진술이 바뀌는가?	
환자의 병력	③ 환자의 손상병력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신체검진 소견이 있는가?	
환자의 나이 고려	④ 환자의 평소 활동상태를 고려할 때 발생하기 힘든 상황으로 다쳤다고 판단되는가?	
	⑤ 손상 부위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아닌가?	
신체검사 소견	⑥ 환자의 신체검진에서 방임이나 학대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는가?	
	⑦ 환자의 수상 원인으로 가족/보호자/간병인으로 진술하거나 의심되는가?	
관계에 대한 포괄적 느낌	⑧ 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노인학대가 의심되는가?	

2) 보건복지부·대한소아응급의학회(2014),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선별도구 개발.



기관소개

‘어떻게 도와줄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사 례 적 용

- ① K요양병원 관계자는 입소 어르신이 배우자에 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는 것 같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
- ② **사례접수**를 통해 학대행위자가 술을 마실 때마다 병실에 찾아와 부인에게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응급학대의심사례로 접수 판정**함
- ③ 신고접수 당일, **현장조사 및 사정**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상황과 학대행위자 및 자녀관련 **정보를 파악**함
- ④ **응급사례로 판정**되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을 위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일시 보호** 후, 사정을 통해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개선으로 목표 설정함
- ⑤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욕구에 따라 가정법률상담사와 연계하여 이혼 절차 법률정보제공, 전문상담사와 심층상담, 심리치료, 부부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함
- ⑥ 학대행위자의 태도변화로 재학대 위험감소 및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변화 등 긍정적 관계개선을 통해 **사례평가 후 종결**함
- ⑦ 종결 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 '부부관계개선프로그램'에 참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서로를 챙기며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학대행위자의 개선된 모습을 통해 **재학대 여부 확인**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소개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의 향상을 위한 업무 실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의식주 등 쉼터 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지원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퇴소(최대 4개월 입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양로시설(52개소)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학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짧은 전화 한 통이 학대로 고통 받는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또는 **110**



Silver Smile이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생한 Silver Smile 브랜드는, 노인학대 없는 밝고 건강한 노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노인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행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서울시 마포대로 182-10(공덕동105-155) 성촌빌딩 2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6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